

군입영 휴학자 학점 취득에 관한 지침

제1차 (전문)개정 2025. 05. 14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칙 31조 8에 따른 군입영 휴학자들의 학점 취득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병역법에 따라 육·해·공군(해병대 포함), 의무경찰, 사회복지요원,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학점이수) 학칙 제31조 8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11조 8항에 따라 군휴학 학생 취득(신청)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고 최대 12학점 범위 내로 한다.

제4조(수강료) 학점당 70,000원으로 정한다.

제5조(교과목 개설 및 수강정원)

- ① 교과목 개설은 우리 대학에서 교과목 편성 및 제작된 e-러닝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.
- ② 각 교과목별 수강정원은 50명으로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) 매 학기 개강 전·후 1달 간 수강신청이 진행되며, 군인공제회에서 일괄 접수 및 해당 수강신청 자료를 우리 대학으로 전달하여 학사관리 서버에 입력함으로써 수강신청 처리한다.

제7조(수업기간)

- ① 수업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개시일(개강일)부터 시작한다.
- ② 수업은 15주 이상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, 출석, 과제물 제출, 시험 등의 모든 수업 운영 사항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.
- ③ 교과목당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수강취소 및 환불)

- ① 수강취소는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가능하며 이후 수강취소는 불가하다.
- ②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환한다.
 - 1. 개강 2주 전 : 수업료 전액
 - 2. 개강 2주 후 : 수업료의 3분의 1

제9조(성적평가)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타 교양교과목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A+ ~ F학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,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로 처

리한다.

제10조(학적부 등재) 군 휴학 중에 취득한 학점은 학기를 구분하여 “군 휴학 중 학점 취득”이라는 항목으로 표기하여 처리하며 군 휴학 중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.

제11조(장려금 지급) 군 휴학자에 대한 e-러닝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업시수는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교과목 제공 장려금은 원격교육개발센터에서 지급한다.